

제2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I. 논문 공모 안내

1. 목적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 (Innovation Competition Regulation Law Center)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연구능력 함양을 위하여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참가자격

- 전국 대학(원)생: 대학생(전공 무관), 일반대학원생(석사/박사과정), 법학전문대학원생
-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최대 2인)로 응모 가능

3. 논문 주제

-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쟁점으로서 ICR센터의 설립취지(www.icr.re.kr 참조)에 부합하는 자유주제 (경쟁법·규제법·방송통신법·지적재산권법 분야 및 이와 관련된 통섭적 주제) 단, 법제도 또는 법이론적 함의가 있어야 함

4. 응모 기한 및 주요 일정

- 논문 접수마감: 2014. 8. 25.
- 심사 결과발표: 2014. 9. 30.
- 시상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 2014. 10월 중순(추후 확정 공지)

5. 시상 내역

- 최우수상 (1편): 고려대학교 총장상/ 상금 200만원 및 해외학술행사(중국) 참가기회
- 우수상 (2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 상금 150만원
- 장려상 (3편): 고려대학교 ICR센터장상/ 상금 100만원

6. 특전

- 수상 논문은 ICR센터 발간 연구논문집에 게재
- ICR센터 주최 학술행사에서 논문 발표기회 제공
- 수상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추천서 제공
- 참가자에게는 대회참가증명서 제공

7. 논문의 평가 기준

- 연구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 및 시의적절성
-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참고자료의 신뢰성
-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여도
- 논문의 형식기준

※ 응모 논문은 통상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표절, 대리 작성 등) 및 학술 논문 작성 요령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또는 타 경연대회 중복수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시상 이후라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논문심사에는 ICR센터의 기관 후원회원인 6개 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함

II. 논문 작성 요령 - 규제와 법정책 심사규정을 따름

1. 원고작성 기준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출판간사에게 제출한다.

(2) 제출원고의 구성

1) 제출원고는 『표지-제목-저자 표시-국문초록-국문주제어(5개 내외)- 목차개요(큰 제목까지만)-본문-참고문헌-외국어초록(권장사항)-외국어 주제어(권장사항)』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A4용지 25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성명, 소속기관과 직책, 주소, 연락처 (사무실 및 모바일 전화 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외국어 초록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초록본문, 주제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논문의 내용에 따라서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목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 I ('큰제목'으로 설정)
- 1. ('중간제목'으로 설정)
- (1) ('작은제목'으로 설정)

- 1) ('아주작은제목'으로 설정)
- (가) ('바탕글'로 설정)
- 가) ('바탕글'로 설정)
- i) ('바탕글'로 설정)

(3) 원고의 편집형식

- 1) 편집용지(A4)의 여백주기(글에서 F7 키를 누름)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 30, 오른쪽 : 30, 머리말 : 15, 꼬리말 : 15.
- 2) 글자모양
 - 서체: 바탕, 자간 : -5, 장평 : 100, 크기 : 10.
- 3)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 0, 들여쓰기 : 10, 줄간격 : 160, 문단 위 : 0, 문단 아래: 0, 낱말간격 : 0, 정렬방식 : 혼합.

2. 각주의 표기

(1) 기본원칙

- 1)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단, 각주는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의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 예) Harvard Law Review -> H. L. R.

(2)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1) 저서의 인용

(가) 저자명, 『서명』, 판수,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수.

(예)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7판, 법문사, 2013, 10면.

(나)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성명으로 표기한다.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성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서명은 국내서에 따른다.

(예) 프랑크 잘리거 지음/윤재왕 옮김, 『라드부르흐 공식과 법치국가』, 세창출판사, 2011, 10면.

2) 정기간행물의 인용

(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인용면수.(필요한 경우 출판년도 앞에

잡지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다)

(예) 김연태,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안암법학」 제35권, 안암법학회, 2011. 11면.

(나) 월간지의 경우 제○권 ○호와 출판년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다)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3) 기념논문집의 인용

(가)저자명, "논문제목", 기념 논문집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나)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4) 판례의 인용

(가) 판결: 대법원 ○○○○.○○.○○. 선고 ○○◇○○ 판결.

(나) 결정: 대법원 ○○○○.○○.○○. 자 ○○◇○○ 결정.

(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 선고 ○○헌◇○○ 결정.

5)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

(가)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최종접속일자).

(예)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68>> (최종 접속: 2012.11.02.).

(3)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1) 저서인용: 저자명, 앞의 책, 면수.

2) 논문인용: 저자명, 앞의 글, 면수.

3) 논문 이외의 글 인용: 저자명, 앞의 글, 면수.

(4) 기타 사항

1)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한다. 저자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되 /이후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외 남은 저자수를 표기한다.

(예) 서정범/김연태/이기춘, 『경찰법연구』, 제2판, 세창출판사, 2012, 11면.

- 2) 외국문헌과 외국판결을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 3) 면수의 표기는 다음에 의한다.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11면, 15면-19면)으로, 외국어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11, pp.15-19) 또는 S.(S.11, S.15 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 4)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 출처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하고 재인용 출처 맨 뒤에 “~에서 재인용”이라 밝힌다.

3. 참고문헌의 표기

(1) 순서

국문,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2) 국내문헌

- 1)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서명』, 판수, 출판사, 출판년도.
- 2) 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부록 : 규제와 법정책 원고 작성방법 377

(3) 외국문헌의 경우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을 준용한다.

4. 논문초록의 표기

- (1) 국문초록은 제목-저자 다음에 첨부한다. 초록 뒤에는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작성한다.
- (2)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택1)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부한다. 외국어 초록 뒤에는 5개 내외의 외국어 주제어를 작성한다.
- (3) 논문초록에는 초록작성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